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27.(금) 조간 배포 2026.11.26.(목) 09:00

보험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
- 판매수수료 **지급한도 상한설정·공시규제 강화**를 위한 **행정지도 시행** 및 판매수수료 관련 **기초서류 관리·감독 강화** -

◈ **'27.1월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시행**에 맞춰 제도 시행의 **실효성 확보**를 위해 **판매수수료 상한**을 설정하고 **공시규제**를 **강화**하는 **행정지도** 시행

❶ (**사업비 집행**) **보험회사**가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**보험료**에 **반영**된 **계약체결비용**과 **표준해약공제액** 중 **작은 금액 이내**에서 판매수수료를 집행하도록 **모집수수료 지급한도** 규제 강화

* (기존)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
(개선)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과 표준해약공제액(종신사망보험의 경우 1.4배※) 중 작은금액 이내에서 지급

※ 종신사망보험의 경우, 계약체결비용 관련 공시규제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계약체결비용을 표준해약공제액의 1.4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

❷ (**사업비 공시**) **기준연령 요건**뿐만 아니라 **전체 연령·납입기간** 조건에서 **계약체결비용**이 **표준해약공제액**을 **초과**하는 경우 **공시의무**를 **부과**하여 현행 **공시규제**의 **우회 소지 차단**

* (기존) 남자 만 40세, 최장기납 등 기준연령 요건에서만 공시의무 부과
(개선) 전체 연령, 납입기간 조건에서 공시의무 부과

⇨ **'27.1월** 새로운 제도의 **시행시기**에 맞춰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**우선적**으로 **행정지도**를 **시행***하고,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**보험업감독규정 개정**도 **병행 추진**

* ❶(사업비 집행) '27.1.1.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
❷(사업비 공시) '27.2.1.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(추가적인 준비기간 고려)

◈ **기초서류**에 **판매수수료 지급기준**을 명확히 **반영**하고, 수익성 분석 및 실제 수수료 지급 시 **해당 기준**을 **준수**하도록 **관리·감독 강화**

Ⅰ. 추진배경

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 등으로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,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, **판매수수료**는 보험회사의 **영업구조·판매 전략** 등에 **중대한 영향**을 미치는 **핵심적인 요인**으로 인식되어 왔다. 다만, '23년 IFRS17 **도입**으로 보험회사의 **사업비** 지출 부담이 **감소***하면서 보험회사의 **사업비 지출 규모**도 **크게 증가****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높은 사업비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**소비자**에게 **전가**되고, 불완전판매와 잦은 계약승환 등 **불건전 영업행위**를 유발하며, 과도한 판매인센티브 경쟁에 따라 **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저해**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.

* 선지급한 사업비를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"최대 7年"에서 "全보험기간"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사업비 비용처리 부담이 급격히 감소

** 판매수수료(조원) : ('19) 15.6 ('20) 16.5 ('21) 17.8 ('22) 16.0 ('23) 19.0 ('24) 23.7 ('25) 27.3 ('26.上) 14.1

이에 정부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,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「**판매수수료 개편방안***」을 **마련**('26.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)하였고, **'27.1월**부터는 **수수료 분급제도**가 시행될 예정이다. 그 일환으로 **선지급수수료**와 **유지관리수수료** 각각이 보험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된 '**계약체결비용**' **이내**에서 지급될 예정이다. 그러나 보험회사가 **계약체결비용 자체**를 **높게 설정**하는 방식 등을 통해 **판매수수료 지급**을 **확대**할 우려가 있는 등 제도의 **보완필요성**이 지속 제기되었다.

* '26.1.14일, 금융위·금감원 보도자료 참조("보험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,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)

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**계약체결비용 부과 실태** 및 **수수료 관련 기초서류**(수수료등 지급기준*)을 **점검**한 결과, **다수의 미비점**이 확인되었다. ①먼저 **계약체결비용**과 관련하여, 현재 **계약체결비용**이 **표준해약공제액****을 초과하는 경우 **공시의무**를 부과하고 있는 **기준연령 요건**(만 40세 및 최장기납)에서는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이내로 관리되고 있었다. 그러나 공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한 **전체 판매가능한 계약조건**을 기준으로 할 경우, 회사별 평균 **약 10%의 계약조건**에서 **표준해약공제액**을 **초과**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고 있었으며, 해당 계약조건의 **계약체결비용**은 **표준해약공제액보다 평균 57% 높은 수준**으로 나타났다.

* 보험회사가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지급기준(보험업감독규정 §4-32①)

**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(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)의 상한(보험업감독규정 §7-66 및 별표14)

②또한, 다수 보험회사는 **기초서류**에 **수수료등 지급기준**을 명확히 **반영***하지 **않고 있는 것**으로 확인되었다. 또한, 기초서류에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반영한 경우에도 **추가 수수료 지급 관련 비용**을 포함시키지 **않거나** 수수료 **지급기준**을 **벗어나** 수수료를 **과다집행**하는 등 지급기준을 **형식적**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보험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(임원 확인)하고, 기초서류(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)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여야 함(보험업감독규정 §7-64)

이에 금융당국은 **보험업계 간담회***('26.11.24일)를 통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, **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방지**와 **계약체결비용 부과기준** 및 **공시규정**의 철저한 **준수**를 당부하였다. 또한,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**미비점**을 **보완**하고, '27.1월 시행될 판매수수료 **분급제도**의 **실효성**을 **확보**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한도 제한 및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**행정지도**를 **마련·시행**하게 되었다.

* 보험회사·보험협회 상품·영업담당 임원 등 참석

Ⅱ. 행정지도 주요내용

1 판매수수료 지급한도 설정 강화 ('27.1.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)

'27.1월부터 시행될 **수수료 지급한도**를 **계약체결비용**과 **표준해약공제액** 중 **작은 금액**으로 제한*한다.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**계약체결비용 자체**를 표준해약공제액 수준보다도 **높여** 판매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**억제**한다.

* (기존)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

(개선)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과 표준해약공제액(종신사망보험의 경우 1.4배※) 중 작은금액 이내에서 지급

※ 종신사망보험의 경우, 계약체결비용 관련 공시규제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계약체결비용을 표준해약공제액의 1.4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

2 계약체결비용 공시 확대 ('27.2.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)

현재는 **만40세, 최장기납** 등 **기준연령 요건**에 대해서만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**공시의무**를 **부과**하고 있으나,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전체 연령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 **전체 가입조건**에 대해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**공시**하도록 한다. 이를 통해 계약체결비용 관련 **공시규제**의 **실효성**을 높이고, 소비자의 상품 비교·선택에 필요한 **정보**를 보다 **충실**하게 **제공**하도록 한다.

다만, 공시 확대 관련 행정지도의 경우 현재 판매중인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**자체 점검**하고 **시스템**에 **반영**하는 등 **준비시간**이 필요한 만큼 1개월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**'27.2.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**한다.

Ⅲ. 기대효과

이번 행정지도로 보험회사가 계약체결비용을 높여 판매수수료 지급 재원을 확대하는 유인을 완화하고, 보험설계사·GA 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한다. 이를 통해 ❶보험회사는 **판매수수료 중심**의 **경쟁**에서 **벗어나**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 상품 자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쟁하고, ❷모집조직은 과도한 신규계약 유치 경쟁보다는, 계약유지·관리 등 **장기적인 고객 관리**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**영업관행**을 **개선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❸**공시**를 **강화**하고 **과도한 사업비 지출**을 **억제**하여 소비자의 **보험료 부담**을 **완화**하고 소비자의 **합리적인 상품 선택**을 지원한다.

Ⅳ. 향후계획

금번 지도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, 해당 사항에 대한 **보험업감독규정 개정**도 조속히 추진한다. 아울러 행정지도 시행 이후 판매수수료등 지급 기준의 **기초서류 반영·관리**의 **적정성**과 판매수수료 등 **사업비 집행현황**을 **지속적**으로 **점검**하면서, **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행위** 등에 대해서는 **엄정**하게 **대응**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민	(02-2100-2961)
	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	책임자	국 장	최성호	(02-3145-5210)
		담당자	부국장	송상욱	(02-3145-521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박원규	(02-3145-7474)
	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곽정민	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770)
	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정영락	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재	(02-3145-7510)
	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	책임자	국 장	손인수	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현중	(02-3145-726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